

#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검토과정

- 제출일자 : 2021. 6. 3.
- 제출자 : 서 구 청 장
- 검토일자 : 2021. 6. 4.

## 2. 근거법령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, 제76조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조, 제73조

## 3. 주요내용

-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

## 4. 검토의견

- 본 폐지조례안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규정된 재해영향평가 관련 위임사무에 대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,  
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됨.